광주 남구 봉선3차 한국아델리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 없음	당첨일로부터 3년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단위 청약지역 확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30) 현재 당 주택건설지역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제10조 3항제5호에 의거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단 전라남도 내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의 거주자는 본 아파트 1,2순위에 청약이 불가하며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노인, 장애인 1층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30)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1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소음도 예측평가 결과 5층이하 부분 및 6층이상 부분 전층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도 기준[65db(A)미만]을 만족함.

교통소음 측정결과(현황)		주간 1회	주간 2회	주간 3회	주간 4회	주간 평균	야간 1회	야간 2회	야간 평균	비 고
현재 소음도	N-1	57.7db	55.6db	56.1db	57.7db	56.8db	54.0db	53.6db	53.8db	101동 건축선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43371호 (2012. 11. 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34-4번지 외 29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3~15층 6개동 총 2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16,855.30㎡ 중 아파트 지분 16,455.30㎡, 상가 지분 400.0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279세대 중 특별공급 75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7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8세대 포함)

(단위 : 면적- ㎡, 금액-원)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층별구분	공급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계약시	계약금 2회 2013.01.18	중도금 1회 2013.03.18	중도금 2회 2013.06.18	중도금 3회 2013.09.18	중도금 4회 2013.11.18	중도금 5회 2014.02.18	중도금 6회 2014.05.18	잔금(입주지정일)
민영주택	2012001063-01	84.9738 (A)	84.9738	37.9929	122.9667	39.9749 (3.8905)	166.8321	59.0504	1층	4	83,018,628	197,531,372	280,550,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56,110,000
									2층	8	83,018,628	202,561,372	285,580,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57,116,000
									3층	8	83,018,628	207,601,372	290,620,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58,124,000
									기준층	80	83,018,628	212,631,372	295,650,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59,130,000
									최상층	8	83,018,628	249,891,372	332,910,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66,582,000
	2012001063-02	84.8150 (B)	84.8150	38.1497	122.9647	39.9002 (3.8833)	166.7482	58.9401	1층	3	82,863,558	197,686,442	280,550,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28,055,000	56,110,000
									2층	3	82,863,558	202,716,442	285,580,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28,558,000	57,116,000
									3층	4	82,863,558	207,756,442	290,620,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29,062,000	58,124,000
									기준층	44	82,863,558	212,786,442	295,650,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29,565,000	59,130,000
									최상층	4	82,863,558	250,046,442	332,910,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33,291,000	66,582,000
	2012001063-03	84.9056 (C)	84.9056	37.6270	122.5326	39.9428 (3.8874)	166.3628	59.0030	1층	4	82,951,989	195,648,011	278,600,000	27,860,000	27,860,000	27,860,000	27,860,000	27,860,000	27,860,000	27,860,000	27,860,000	55,720,000
									2층	4	82,951,989	200,648,011	283,600,000	28,360,000	28,360,000	28,360,000	28,360,000	28,360,000	28,360,000	28,360,000	28,360,000	56,720,000
									3층	4	82,951,989	205,648,011	288,60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57,720,000
									기준층	40	82,951,989	210,648,011	293,600,000	29,360,000	29,360,000	29,360,000	29,360,000	29,360,000	29,360,000	29,360,000	29,360,000	58,720,000
									최상층	4	82,951,989	247,648,011	330,600,000	33,060,000	33,060,000	33,060,000	33,060,000	33,060,000	33,060,000	33,060,000	33,060,000	66,120,000
	2012001063-04	84.8768 (D)	84.8768	37.8831	122.7599	39.9293 (3.8861)	166.5753	58.9830	1층	2	82,923,871	197,066,129	279,990,000	27,999,000	27,999,000	27,999,000	27,999,000	27,999,000	27,999,000	27,999,000	27,999,000	55,998,000
									2층	2	82,923,871	202,086,129	285,010,000	28,501,000	28,501,000	28,501,000	28,501,000	28,501,000	28,501,000	28,501,000	28,501,000	57,002,000
									3층	2	82,923,871	207,116,129	290,040,000	29,004,000	29,004,000	29,004,000	29,004,000	29,004,000	29,004,000	29,004,000	29,004,000	58,008,000
									기준층	19	82,923,871	212,136,129	295,060,000	29,506,000	29,506,000	29,506,000	29,506,000	29,506,000	29,506,000	29,506,000	29,506,000	59,012,000
									최상층	2	82,923,871	249,326,129	332,250,000	33,225,000	33,225,000	33,225,000	33,225,000	33,225,000	33,225,000	33,225,000	33,225,000	66,450,000
	2012001063-05	84.7726 (E)	84.7726	37.8140	122.5866	39.8803 (3.8813)	166.3482	58.9106	1층	1	82,822,084	190,757,916	273,580,000	27,358,000	27,358,000	27,358,000	27,358,000	27,358,000	27,358,000	27,358,000	27,358,000	54,716,000
									2층	1	82,822,084	195,667,916	278,490,000	27,849,000	27,849,000	27,849,000	27,849,000	27,849,000	27,849,000	27,849,000	27,849,000	55,698,000
									3층	1	82,822,084	200,577,916	283,40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56,680,000
									기준층	11	82,822,084	205,487,916	288,310,000	28,831,000	28,831,000	28,831,000	28,831,000	28,831,000	28,831,000	28,831,000	28,831,000	57,662,000
									최상층	1	82,822,084	241,817,916	324,640,000	32,464,000	32,464,000	32,464,000	32,464,000	32,464,000	32,464,000	32,464,000	32,464,000	64,928,000
	2012001063-06	84.3219 (F)	84.3219	38.7751	123.0970	39.6682 (3.8607)	166.6259	58.5974	1층	1	82,381,758	192,588,242	274,970,000	27,497,000	27,497,000	27,497,000	27,497,000	27,497,000	27,497,000	27,497,000	27,497,000	54,994,000
									2층	1	82,381,758	197,528,242	279,910,000	27,991,000	27,991,000	27,991,000	27,991,000	27,991,000	27,991,000	27,991,000	27,991,000	55,982,000
									3층	1	82,381,758	202,458,242	284,840,000	28,484,000	28,484,000	28,484,000	28,484,000	28,484,000	28,484,000	28,484,000	28,484,000	56,968,000
									기준층	11	82,381,758	207,398,242	289,780,000	28,978,000	28,978,000	28,978,000	28,978,000	28,978,000	28,978,000	28,978,000	28,978,000	57,956,000
									최상층	1	82,381,758	243,918,242	326,30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65,26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향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5%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 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노인, 장애인 1층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30)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1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구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신청	2012.12.05(수) (09:00~15: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2.12.05(수) (16:00)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개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를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제13항 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나)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는 주택의 규모 ·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다)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 특별공급자 및 미계약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하거나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으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 미비로 인하여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게 될 경우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계약체결일 : 2012. 12. 18(화), 20(목), 21(금) (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일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9738㎡ (A)	84.8150㎡ (B)	84.9056㎡ (C)	84.8768㎡ (D)	84.7726㎡ (E)	84.3219㎡ (F)	계
일반 특별공급	11	6	6	2	1	1	2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3	3	1	–	–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11	6	6	2	1	1	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2	1	–	–	8
합 계	31	17	17	6	2	2	75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27세대 / 10%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30)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및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13세대 / 5%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 – 부적격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세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증명 서류 등으로 인정되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인한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V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해당사항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 기 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27세대 /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30)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였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기준

구분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4,248,619원 이하	4,719,368원 이하	4,929,228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5,098,342원 이하	5,663,241원 이하	5,915,073원 이하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여야 함.(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평균소득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라)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가구원수 1명으로 산정)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가)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 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8세대 / 3%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30)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 포함)에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 단, 특별공급대상자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등의 배우자 분리세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수도권이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 또는 입양의 경우 임신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등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관련 증명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1순위 청약자격 입증서류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서발급가능)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11.30) 현재 당 주택건설지역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제10조3항제5호에 의거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광주광역시)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단 전라남도 내 청약예금미실시 지역의 거주자는 본 아파트 1,2순위에 청약이 불가하며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노인, 장애인 1층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11.30)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1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특별공급 (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한 분
	1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추첨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동일 계좌로 청약하는 경우 최초 청약시 선택한 주택규모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주택규모)에 신청 가능]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비 고
예치금액	250만원	400만원	광주광역시
	200만원	300만원	그 외지역(전라남도)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7호,1995.2.11.)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012.12.06(목)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평일: 08:00~17:30	• 일시 : 2012.12.13(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www.hankukapt.co.kr)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012.12.06(목)		
	3순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012.12.07(금)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평일: 08:00~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만 가능)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미만	20	
		1년 이상 ~ 2년미만	4	10년 이상 ~ 11년미만	22	
		2년 이상 ~ 3년미만	6	11년 이상 ~ 12년미만	24	
		3년 이상 ~ 4년미만	8	12년 이상 ~ 13년미만	26	
		4년 이상 ~ 5년미만	10	13년 이상 ~ 14년미만	28	
		5년 이상 ~ 6년미만	12	14년 이상 ~ 15년미만	30	
		6년 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미만	11	
		1년 이상 ~ 2년미만	3	10년 이상 ~ 11년미만	12	
		2년 이상 ~ 3년미만	4	11년 이상 ~ 12년미만	13	
		3년 이상 ~ 4년미만	5	12년 이상 ~ 13년미만	14	
		4년 이상 ~ 5년미만	6	13년 이상 ~ 14년미만	15	
		5년 이상 ~ 6년미만	7	14년 이상 ~ 15년미만	16	
		6년 이상 ~ 7년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료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 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감점 산정기준

구분	감점항목 기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 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장기간 보유 특례)
①(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3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인터넷청약⇒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거래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주택청약 인터넷청약시 거래은행에 계좌 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시 가능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2.12.14(금)]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 이후에 자동이체 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2. 12. 13(목) ~ 2012. 12. 22(토)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2. 12. 13(목) ~ 2012. 12. 22(토)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12. 12. 13(목)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 정당당첨자 : 2012. 12. 18(화), 20(목), 21(금)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기업은행	3600–3600–11	대한주택보증(주)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이거나(가점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추첨제)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세대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없음 • 최상층 세대의 다락방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개인 소유면적으로는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확인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주방,식당,복도 (타일,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발코니바닥 배수구	바닥 난방,발코니바닥 방수,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천정	벽지 및 천장지,벽 및 천장 도장, 장식벽(타일,시트지,패브릭),주방벽타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천장(경량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콘센트,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석재(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욕조 하부틀,코킹,바닥배수구,바닥난방,욕실환풍기,스위치,콘센트 욕실장,샤워부스,욕실폰,욕조,양변기,세면기,수전류,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욕실 배기덕트,바닥배수 슬리브,전기,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싱크볼,음식물탈수기,4구쿡탑	설비배관,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전기,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공통 : 최상층세대 계단,다락난간
창호	창호(문틀,목문짝,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문선)	목창호 가틀,문틀사춤,플라스틱 창호내창,현관 방화문,디지털도어락,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84.9738㎡	84.8150㎡	84.9056㎡	84.8768㎡	84.7726㎡	84.3219㎡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23,812,501	₩ 23,812,114	₩ 23,728,437	₩ 23,772,454	₩ 23,738,895	₩ 23,837,734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3.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 4.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5.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6.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7.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공용부분인 세대 내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등 기타 공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9.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10.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14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84.9738㎡	84.8150㎡	84.9056㎡	84.8768㎡	84.7726㎡	84.3219㎡
발코니 확장공사비	₩ 11,500,000	₩ 12,500,000	₩ 12,500,000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선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주택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청약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며, 보다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는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된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 인장날인 이외의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신청자의 입회하에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철회가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될 수 있음,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대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전용면적 내에서 실별, 위치별 크기를 조정하였음(면적, 치수 변경 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색상 및 발코니창호 타입(BI, B2), 티타입(DI) 등이 적용되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시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질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에 따라서 동급 이상의 타 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일정기간 공개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의 사항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불법행위 및 주택관련 서류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보하므로, 주소변경시 우편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추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층의 시공을 위하여 설비유치가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창호, 문, 가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급시에는 전시품이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설계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미디어비평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해 사업에 소요된 아파트의 외관은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세대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만 당사가 시공하여 제공되고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의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이며, 발코니확장공사 금액에는 발코니 창호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발코니 확장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세대는 기 확장된 발코니 창호 등이 설치되며 결로 등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시는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해석 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 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 어린이 공원, 옥외운동시설, 휴게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탑,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의 타입, 배치 및 수량이 비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 홀은 계단실 출입문 개방시에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5개월간 공사용운행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옵션(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견본주택 참고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최상층 단위 세대는 다락층 이동을 위한 계단 설치로 내부실의 공간축소 및 가구배치시 불편함을 인지하고 계단 설치위치에 대하여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 1~2층은 1세대를 필로티 공간으로서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동선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출입구 형태에 따라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면한 실의 경우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 다락방에 설치된 테라스 외부는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각 세대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은 해당 세대의 책임임. • 최상층 세대 다락방 옥외 테라스에서는 주변 환기구로 인한 냄새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 인접대지와 만나는 주변부위는 분양시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단지모형물에서 표현된 모습과 현장시공후 단지 레벨차이 또는 시공조건 등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조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형태,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주변 개발 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단지 주변도로의 미시공 또는 인접부지와의 진입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 조정 등의 방편으로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항,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석재와 석재 뿜칠 혼용하여 적용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선일건축사사무소(주)	㈜금강엔지니어링	㈜엔탑엔지니어링	㈜대한방재엔지니어링
감리금액	₩ 677,031,945	₩ 12,100,000	₩ 4,400,000	₩ 14,3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에프케이산업개발(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광주–주택2007–0009)
시공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전남–주택1992–0001)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12–101–0010000 호	₩65,906,904,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주채무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그 변경된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그 대출이자 6. 보증채권자가 입주금 납부를 지연납부함으로써 부담하는 연체료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 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이외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게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택지비 감정평가 및 기관**

구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금액(㎡/원)	비고
공동주택(아파트)부지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 19,383,595,000	₩ 19,215,042,000	

■ **견본주택 : www.hankukapt.co.kr**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12–9번지 한국아델리움 주택전시관
■ **분양문의 :** ☎ 1577–873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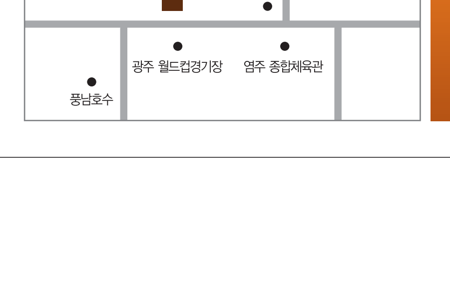

분양문의
1577–8733